한국분석과학회 '2027년도 수석 부회장' 선거공고

1. 회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한국분석과학회 정관 제4장 제13조에 따라 '2027년도 수석 부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2027년도 수석 부회장' 선거 일정

- 선거 관리 위원회 구성: 2026년 07월 21일(화)
- '2027년도 수석 부회장' 선거공고: 2026년 07월 24일(금)
- 후보자 접수(후보 추천서, 이력서, 소견서, 후보자 사진): 2026년 07월 27일(월) ~ 08월 14일(금)
- 선거권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 2026년 08월 10일(월) ~ 08월 14일(금)
- 후보자 자격 검토: 2026년 08월 17일(월) ~ 08월 18일(화)
- 평의원회에 후보자 이력서 및 소견서 메일 송부: 2026년 08월 18일(화) ~ 08월 19일(수)
- **투표: 2026년 08월 20일(목) 09:00 ~ 08월 31일(월) 18:00 까지**
- **개표: 2026년 08월 31일(월), 오후 6시 이후**
- **결과 발표: 2026년 09월 01일(화) [홈페이지 공고, 평의원회와 이사회에 보고]**

2) 수석 부회장 피선거권자의 자격

- 수석 부회장 피선거권자는 정회원 15명 추천 또는 이사 5명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추천자는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추천권은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 2년간 회비를 납부한 이사 및 평의원에게 부여)

3) 수석 부회장 선거권자의 자격

- 수석 부회장 선출규정 제7조에 따라 투표개시일 7일 이전까지(08월 13일까지) 2026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으로 한다.

4) 투표 방법: 온라인 전자 투표

-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 진행
(선거권자가 어떤 후보자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들도 투표 진행률만 확인 가능하고 개표 시에는 2개의 개표키를 입력해야만 결과 확인 가능)

2026년 7월 24일
선거관리위원장 한상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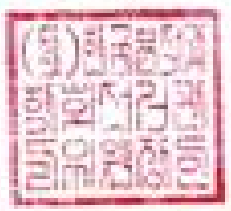

수석 부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명단

위 원 장: 한상범(중앙대학교)
부위원장: 최기인(한국세라믹기술원)
위　　원: 박종호 (전북대학교)
조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주훈 (경희대학교)

첨부 1.

수석 부회장 선출 규정

제1조 (수석부회장의 선출)
수석부회장은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직접선거(전자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수석부회장이 위원장, 현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겸임하여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그리고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후보자격)
수석부회장 후보의 자격은 정회원 15명의 추천을 받거나 이사(총회에서 인준 받은 임원에 고문, 발동위 위원, 감사, 편집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포함) 5명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추천자는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후보등록 및 선거일정)
1. 차기 수석부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가 개최되기 3개월 전에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의 자격을 심사하여 등록하고, 후보자의 이력서 및 소견서를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평의원에게 공지한다.

제6조 (당선자 확정)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을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3. 적격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 (선거권 및 추천권)
1. 선거권은 투표개시일 7일 전까지 당해년도 학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게 부여한다.
2. 추천권은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 2년간 회비를 납부한 이사 및 평의원에게 부여한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나 평의원회 결정에 따른다.

■ 부 칙(2013. 10. 24)
본 규정은 수정안이 이사회의 승인을 획득한 2013년 10월 24일부터 적용된다

■ 부 칙(2016. 10. 06)
본 규정은 수정안이 이사회의 승인을 획득한 2016년 10월 06일부터 적용된다

■ 부 칙(2020. 10. 08)
본 규정은 수정안이 이사회의 승인을 획득한 2020년 10월 08일부터 적용된다

■ 부 칙(2022. 10. 06)
본 규정은 수정안이 이사회의 승인을 획득한 2022년 10월 06일부터 적용된다

첨부 2.

3.2 모바일 전자투표시스템 개인전자투표절차

1. 선거사이트 접속(카카오톡 알림문자 주소 클릭)
↓
2. 온라인투표 준수사항 동의
↓
3. 로그인(이름+개인고유번호 or 휴대폰번호)
↓
4. 투표인증번호 입력 (휴대폰 카카오톡 인증) + 전자서명(옵션)
↓
5. 선거리스트 확인 및 투표시작
↓
6. 대표선출선거 및 안건투표
↓
7. 투표완료클릭(자동로그아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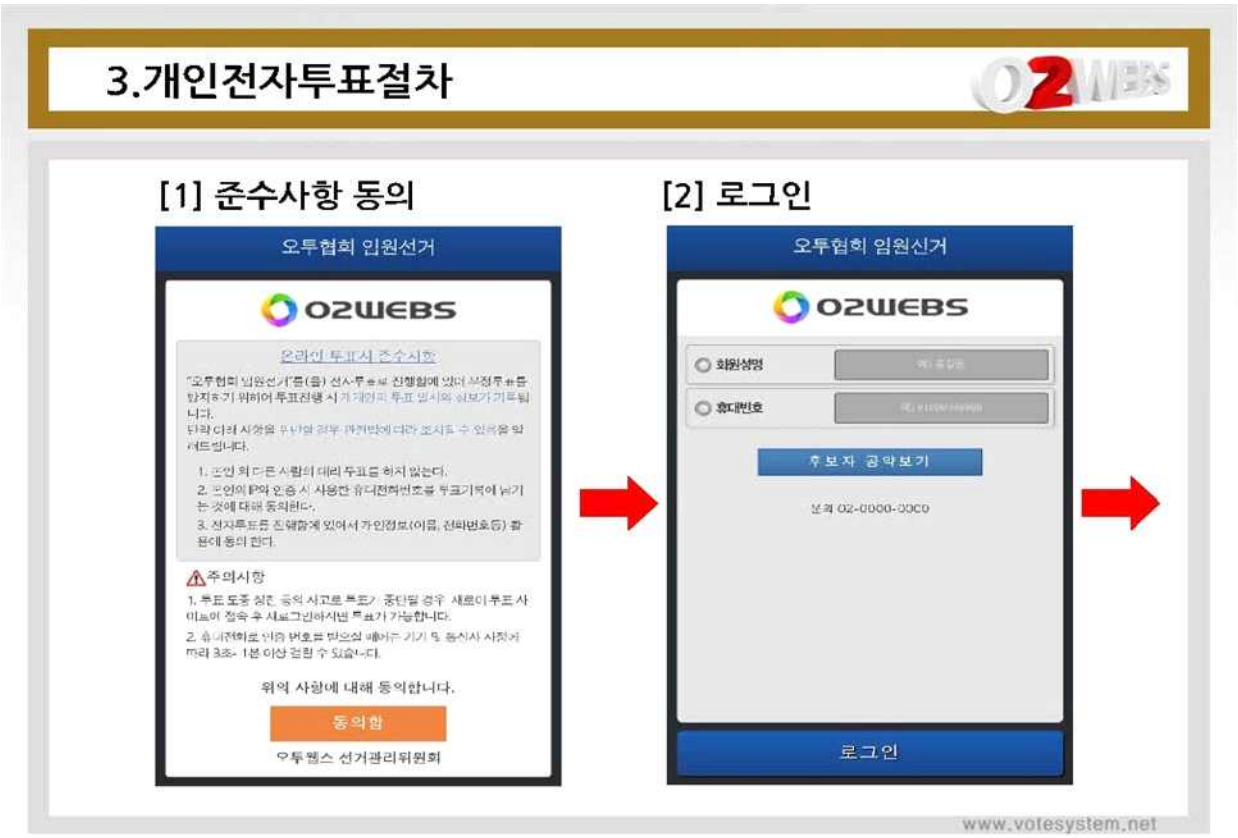

3.개인전자투표절차

[3] 본인인증

[4] 전자서명

www.votesystem.net

3.개인전자투표절차

[5] 대표선거(경선)

[6] 대표선거(찬반)

www.votesystem.net

3.개인전자투표절차

[6] 안건투표

[7] 투표종료